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8-36호

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3-168호(2013.12.3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제2016-59호(2016. 8.25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된,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3번지 일대 신월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9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, 490번지 일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5,735.6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동춘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55, 가인빌딩 2층(신월동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
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3. 12. 31.

6. 사업변경의 사유 및 내용

- 가. 사업변경의 사유 : 정비계획의 (경미한) 변경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
- 나. 사업변경의 주요내용
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 (283→299세대)
 - 사업비 증가
 - 주차계획 변경
 - 정비기반시설(공원) 면적 증가 등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가. 용도지역 : 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 나. 대지면적 : 15,735.60㎡

다. 사업규모 및 용도

- 규 모 : 지하2층/지상18층, 아파트 5개동 299세대(임대 17세대 포함)
-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), 근린생활시설
- 높 이 : 51.65m - 연면적 : 45,568.6588㎡,
- 건폐율 : 26.19% - 용적률 : 228.97%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(단위 : ㎡)

공급 구분	주택의 형 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	59.99	74.89	84.78	84.85
계	아파트	5	299	128	96	30	45
분양	아파트	5	299	128	96	30	45

※ 임대주택 17세대, 조합분양 122세대 포함
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(법 제97조 제2항)

가. 관리청 무상귀속 : 2,344.60㎡(도로 : 1,206.70㎡, 공원 : 1,137.90㎡)

나. 사업시행자 무상양도 : 1,265.60㎡

소재지	지목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무상양도 면적
신월동	도로	2,547.1	518.1	515.20
신월동	도로	2,446.7	780.0	750.40
계		4,993.8	1,298.1	1,265.60

10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제1항 각호의 사항